

의안번호	2205842
의 퇴 인	신정훈의원
회 답 일	2025.1.14.
추계번호	24D5175

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3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4,600만원(연평균 1억 900만원)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6조)	203	0	0	0	203	406	81
민주시민 교육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 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	28	28	28	28	28	140	28
추가재정소요	231	28	28	28	231	546	109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)	-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	재량규정
2	안 제8조(민주시민교육위원회)~제10조(분과위원회)	-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둠 -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-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	의무·재량 규정

3	안 제11조(지역 민주시민교육위 원회의 설치 및 구성)	-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민주 시민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함)를 두어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함)를 둘 수 있음 -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	의무·재량 규정
4	안 제13조(민주 시민교육원)	-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원을 설립함 -민주시민교육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,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-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	의무·재량 규정
5	안 제14조(지역 민주시민교육센 터의 설치 또는 지정)	-시·도지사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음 -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,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-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요건,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6	안 제17조(민주 시민교육기관 경 비 지원 등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9조(지방 자치단체 협의 회)	-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-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8	안 제20조(민주 시민교육 전문인 력의 양성)	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, 연수 및 재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)	○	-
2	안 제8조(민주시민교육위원회)~제10조(분과위원회)	○	-
3	안 제11조(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	×	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의 구성 인원 등을 추정 곤란
4	안 제13조(민주시민교육원)	×	민주시민교육원의 위치, 사업 규모, 설립·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5	안 제14조(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)	×	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·지정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민주시민센터 설치·운영 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6	안 제17조(민주시민교육기관 경비 지원 등)	×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7	안 제19조(지방자치단체 협의회)	×	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별 협의회 구성 인원 등을 추정 곤란
8	안 제20조(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)	×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, 연수 및 재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수·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제정안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, 추계기간 중 2027년과 2031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
- 안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, 전체 위원 수는 20명, 위촉 위원 수는 14명으로 가정
 - 위원회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, 위촉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7명씩 있다고 가정
 -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,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
 -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, 수당 이외 인쇄비 등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기본경비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
- 안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4억 6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~2023년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¹⁾(2억 300만원)을 적용함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연구·용역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과 2031년에 비용 발생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	203	0	0	0	203	40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행정안전부의 2021년~2023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(자료: 행정안전부)
 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2억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억 6,000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 5,000만원)

나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(안 제8조~제10조)

-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27년 2,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4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각각 14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
[표 3]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민주시민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 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	28	28	28	28	28	1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3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4,600만원(연평균 1억 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6조)	203	0	0	0	203	406	81
민주시민 교육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 (제8조부터 제10조까지)	28	28	28	28	28	140	28
합 계	231	28	28	28	231	546	109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